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472
----------	-----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8일

발의자: 이창열 의원

찬성자: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의원

### 1. 제안이유

-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평창군 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자급률을 높이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자, 사업, 지원제한 등(안 제5조 ~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축산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5. 8. 26. ~ 2025. 9. 3. 의견없음.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 사일리지 벗짚 등으로 써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가축 사료를 말한다.
3.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경축순환농법”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순환형 농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 공급과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

별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조사료 재배 및 수급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 계획
3. 세부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또는 단체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2. 조사료 종자 구입 및 자급 종자 생산 기반 조성
3. 초지 조성 및 방목지 관리
4. 조사료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②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기계·장비의 구입 및 설치

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운송비 지원
3. 조사료 포장 및 저장 시설 구축
4. 경축순환농법을 위한 퇴비살포기 및 관련 장비 구입
5. 조사료 재배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생산·유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필요시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농·축·수산·임산물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7. (생략)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

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

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사업 등)
- 나. 비용발생 요인 : 축산농가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조사료 재배농가 105호(2025. 8월 기준) 대상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지원
  - TMR 제조장비, 조사료 자동 급이기,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구입, 사일리지 발효제,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등 지원

### 나. 추계 결과

구 분	산출기초(2025년)	예산액(천원)	비 고
TMR 제조장비 지원	60,000천원×1개소×70%	42,000	도비+자체
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15,000천원×1개소×70%	10,500	도비+자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3,380원×7,717톤×90%	440,195	국비+도비+자체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462천원×132ha×50%	30,492	국비+도비+자체
조사료 구입 지원	600천원×1,667톤×50%	500,000	자체사업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지원	70천원×400개×50%	14,000	자체사업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지원	48,750천원×2개소×50%	48,750	자체사업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	462천원×130ha×50%	30,000	자체사업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	462천원×140ha×50%	32,340	도비+자체

###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 보조 및 자체 재원(2025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연락처	(033) 330 - 13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5,741,385
TMR 제조장비 지원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40,195	440,195	440,195	440,195	440,195	2,200,975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30,492	30,492	30,492	30,492	30,492	152,460
조사료 구입 지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지원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지원	48,750	48,750	48,750	48,750	48,750	243,750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	32,340	32,340	32,340	32,340	32,340	161,700
재원 조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5,741,385
의존 재원	소 계	257,246	257,246	257,246	257,246	257,246 1,286,230
	보조금	257,246	257,246	257,246	257,246	257,246 1,286,23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91,031	891,031	891,031	891,031	891,031 4,455,155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891,031	891,031	891,031	891,031	891,031 4,455,15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